

인천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1가단2291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4. 19.

판 결 선 고 2022.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8. 3. 체결한 재산분할계약은 4,514,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경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25877호로 D을 상대로 보관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8. 14. 위 법원으로부터 22,801,2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6.경 인천지방법원 2018드단106630호로 D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조정절차에서 2018. 8. 3. 피고와 D이 이혼하고, 두 자녀의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며, 자녀들의 양육비로 D이 피고에게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위 조정의 내용 중 재산분할 부분을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고 한다).

다. D은 2018.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의 채무자인 D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였으나, 당시 D과 피고의 재산상태 및 재산취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도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을 D에 대한 채권원리금 중 잔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해 취소된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2) 갑 제5, 6, 17호증, 을 제2, 5, 6, 12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2018. 9. 20.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서울 관악구 E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고, 2021. 4. 2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나, 이는 피고와 D이 이혼 등 소송에 따른 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을 합의한 후에 진행된 절차로서, 건물을 건축한 시점이나 건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산분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D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서울 관악구 F 소재 G호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빌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하여 D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 중 32,958,821원을 배당받은 점, ③ 피고는 당초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D에게 있다며 D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분할 등을 구하였는데, 위 소송에 따른 조정절차에서 담당 법관의 관여하에 당사자들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정 및 쌍방이 재산을 취득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지급액 등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D의 재산상태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등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한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준규

별지